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나6364 제3자의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50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2. 10. 25. 선고 2012가단5230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1.

판 결 선 고 2013.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1가소85033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2. 2.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와 ●●●(이하 '○○○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1가소8503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1. 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2. 2.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물건은 원고가 ○○○와 ●●●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2천만 원의 채권에 관한 대물변제로 양도받은 다음, 이들에게 월 50만 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다시 대여해 준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와 ●●●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물건을

양도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까지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와 ●●●은 원고의 장인 및 장모이다.

(2) 이 사건 각 물건은 가전제품, 운동기구, 가구 등 일상의 생활용품인데, 사위인 원고가 장인 및 장모인 ○○○와 ●●●으로부터 채권의 대물변제 내지 담보로 이 사건 각 물건을 양도받고, 다시 이들에게 사용료를 받기로 하여 이 사건 각 물건을 대여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갑 제2호증(인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와 ●●●은 2008. 3. 4. 원고에게 2천만 원에 관하여 이자 연 30%, 변제기 2018. 12. 30.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같은 날 곧바로 원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물건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들에 관한 인증까지 마쳤다는 것인데, 이 또한 원고와 ○○○, ●●●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2천만 원에 이르는 채권의 대물변제로 가액 합계 337만 원(이 사건 강제 집행 당시의 평가액) 상당에 불과한 이 사건 각 물건을 양도받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4) 갑 제2호증의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물건과 이 사건 각 물건은 몇 개 품목만 동일할 뿐 나머지는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2007. 11.경 ○○○와 ●●●에게 주식회사 ◇◇◇◇ 0000의 사업자금으로 2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한 ○○○○ 및 감사로 재직한 ●●●과 더불어 이사(1999. 7. 8.부터 2002. 7. 8.까지, 2002. 12. 28.부터 2005. 7. 12.까지, 2005. 7. 12.부터 2008. 8. 27.까지) 또는 대표이사(2005. 1. 12.부터 2007. 3. 7.까지)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판사 박준범

 판사 여태곤